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 무 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등록기준일
	주소(자택)	(직장)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 등록 사항	그 밖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등록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승진]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거주 형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 ‘고지거부’란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란 :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란 :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거주형태’란 :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소계)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제 7호에 따른 그 외 의 주식에 한함)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소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사항						
총계						

기 재 요 령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① 토지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② 건물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제4호의 기재요령 참조
- ④ 현금(수표 포함)
- ⑤ 예금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⑦ 증권 :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⑧ 채권 : 채무자와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 ⑨ 채무 :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와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⑩ 금·백금 : 종류·합량·종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⑪ 보석류 :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⑫ 골동품·예술품 :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⑬ 회원권 : 발행인·회원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⑭ 지식재산권 :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⑮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가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 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자기앞 수표 포함
-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으로 적으십시오.
- 증권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 재 요 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 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고,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 재 요 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 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 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 : 일반단독주택·다가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②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 매
매당사자, 매매일과 총금액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
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

10.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기
재하십시오.

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
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 재 요 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② 자동차 :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④ 선박 : 종류·용도·선박 명·총 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⑤ 항공기 :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②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자동차의 경우 재산등록기준일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
 - ③ 매매 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각 소유자별로 "6. 예금"항목과 "7.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6"항목과 "7"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비교란에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 외화예금은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교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각 소유자별로 "6. 예금"항목과 "7.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6"항목과 "7"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하십시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예금"으로 적으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 자	관 계	증권의 종류	예탁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 원)	형성과정	비 고
				계좌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비상장주 식(법 제 4조 제3항제7 호에 따 른 그 외 의 주식 에 한함)						취득일자: · 취득경 위: · 소득원: ·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일자: · 취득경 위: ·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xx전자)을 기재하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예: 2007. 1. 1. ~ 2008. 12. 31.) :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8. 가액산정방법

-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④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 · 상속 · 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 · 상속 · 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간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

입력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번호	발생 일	만기 일	채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의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의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
 - 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 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 재 요 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일 련 번 호	소유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매출액(천 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취득일자: · 취득 경 위: · 소득원: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 항목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십시오.(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이 아니나 재산변동 사항의 소명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등록 가능)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록의무자후보자	①선거명		②선거구명	
	③소속정당명		④성명	
⑤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고 사항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
<p>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p>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②선거구명"란을 공란으로 둡니다.
 2.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후보 자 재 산 신고 사항					
①소속 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명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 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 원)	⑨비고
합계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에 선거구명은 미기재.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가. 부동산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나. 동산 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교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증권⇒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지식재산권⇒합명·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중에서는 부·모, 직계비속에서는 나이순으로 기재함.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각 항목 별 기재 요령

1. 토 지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매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하였다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 아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 매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
 (계약금만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m²)을 기재함.

라. "가액"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²)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총금액"을 기재함.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세부 주소 포함)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² (1평은 3.3m²)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라. "가액"란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세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기재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²)"으로 산정함.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②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 ④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 ⑤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다. "가액"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4. 현금(수표포함)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둠.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5. 예 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항목과 "6.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항목과 "6"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권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적금·보험의 경우 "만기일"과 "만기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회비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예금이 문중회비일 경우 ⇒ "문중회비"라고 표시함)

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가. 신고대상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항목과 "6.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항목과 "6"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나. "재산의 종류"란 : "예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7. 증 권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등으로 기재함.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

8. 채 권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신고함.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1. 토지" 또는 "2.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9. 채 무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10. 금 및 백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11. 보석류

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12. 골동품 및 예술품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 연도)" 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cm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13. 회원권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으로 기재함.

다. "소채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소채지)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 다만,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14. 지식재산권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음.

다. "소채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15.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다. "소채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 비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다. "소채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